

# 예산총칙

2013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06,934,239	15,208,027
일반회계	489,841,114	14,695,233
특별회계	17,093,125	512,794
기타특별회계	17,093,125	512,794
상수도	12,050,680	361,520
의료보호사업	1,934,944	58,048
기초생활보장기금	1,435,129	43,054
주민소득지원기금	412,508	12,375
묘포장	57,319	1,720
주택사업	166,606	4,998
기반조성사업	8,587	258
회원관광단지조성사업지원	320,950	9,629
회원산업단지조성지원	543,112	16,293
공유임야관리	163,290	4,89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528,76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0,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